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3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거주에 관한 증명은 발급근거가 폐지되었기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 · 공포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관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가.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 · 초본발급 수수료 면제조항 삭제 (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수수료의 경감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감면대상에 대하여 수수료 경감비율 규정

2) 경감비율 : 50%

3) 경감대상

가)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 거주에 관한 증명 삭제 (안 별표의 1)

라.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개정(안 별표의 3)

- 1) 녹음테이프, 영화필름에 대한 수수료 규정 신설
- 2) 수수료 산정기준의 세분화(기본단위요금 + 초과요금)
- 3)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기준을 적용

III. 검토의견

1. 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1)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제2호)

주민등록열람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교부시 개정(2001. 7. 28)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의 수수료의 면제규정을 보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②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④재해의 발생 등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관계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⑥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⑦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⑧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⑨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주민등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또한 안 별표의 1 거주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1968. 5. 29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거주사실 증명은 공증인의 공증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고, 1968년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 주민등록법상 거주에 관한 증명은 주민등록등·초본으로 갈음처리(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사무편람 참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2) 수수료의 감면규정에 대한 수정의견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제 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일부 조항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9. 1 현재 25개 자치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면제 규정을 두르고 있는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대상자 25, 국가유공자 21, 참전유공자 21, 장애인 20, 문화재 등록 20, 독립유공자 10, 고엽제환자 10, 기타 4개구로 되어 있어 현행 주민등록법령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다른 면제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타 자치구와의 감면대상 범위를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또한 현행 동조동항제2호의 본문내용은 너무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과 같은 입법방식으로 이를 각 호로 신설하며, 후단의 단서 조항을 전단으로 재배열 하는 등 조문 전부에 대하여 일괄정비하는 것이 조례의 본문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 수정의견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 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제8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정의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 의견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경우에는----- ----- -----.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 증명의 수수료료를 면제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1. ----- ----- ----- 제 증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현 행	개 정 안	수정 의견
3.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신청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 -----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행정정보공개와 관련 수수료의 경감

안 제6조제3항에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수수료의 경감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005. 7.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을 보면, 경감범위는 산정된 수수료에서 대략 30~50% 수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6조제3항의 경감비율 50%는 상한선에 맞춰 정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별표의 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의 개정내용은 <표 2>를 보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수수료의 금액에 맞춰 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표 1>

자치구 수수료 징수 면제(제 증명) 현황

2005. 9. 1 현재

자치구별	국 민 기 초	국 가 유공자	참 전 유공자	장애인	문화재 동 료	독 립 유공자	고엽제 환 자	기타
계	25	21	21	20	20	10	10	4
종로구	○	○	○	○	○	×	×	
중 구	○	○	○	○	○	×	×	
용산구	○	○	○	○	○	×	×	
성동구	○	○	○	○	○	○	○	
광진구	○	○	○	○	○	×	×	
동대문구	○	○	○	○	○	×	×	
종량구	○	○	○	○	○	○	○	
성북구	○	○	○	○	○	○	○	
강북구	○	○	○	○	○	○	○	
도봉구	○	○	○	○	×	○	○	
노원구	○	×	×	×	○	×	×	
은평구	○	○	○	×	○	○	○	
서대문구	○	○	○	○	○	○	○	
마포구	○	○	○	○	○	×	×	
양천구	○	○	○	○	○	×	×	
강서구	○	○	○	○	×	×	×	
구로구	○	×	×	×	×	×	×	
금천구	○	○	○	○	○	×	×	
영등포구	○	×	×	×	○	×	×	
동작구	○	○	○	○	○	○	○	5.18 광주유공자
관악구	○	○	○	○	○	○	○	5.18 광주유공자
서초구	○	○	○	○	×	○	○	광 주 민 주 화
강남구	○	×	×	×	○	×	×	
송파구	○	○	○	○	×	×	×	장기동료
강동구	○	○	○	○	○	×	×	

<표 2>

수 수 료 (행정자치부령 제7조 관련)

공 개 대 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 사 대 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 면 · 카 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 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1.7.28>

1. 영 제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재해의 발생 등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